

감 사 보 고 서

- 2021년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

2022.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감 사 관 실

- I. 감사실시 개요 1
-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 1. 일반현황 2
 - 2. 재무현황 3
-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 1. 입점 신청상품 처리 및 토폴평회 평가 부적정 4
 - 2. 농축수산물분야 중소기업 제품 선정·판매 부적정 10
 - 3. 차수변경 운영 부적정 16
 - 4. 샘플관리 부실 운영 20
 - 5. 대체방송상품 선정·관리 미흡 23
 - 6. 승진인사제도 운영 부실 26
 - 7. 부서장 직무대행 운영 부적정 30
 - 8. 임직원 복무규정 부적정 34
 - 9. 파견기간 종료 후 원소속 미복귀 직원 징계과정 등 부적정 39
 - 10. 무료주차이용권 부당사용 관련 자체점검 후 사후처리 부실 44
- IV. 처분 요약 5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공영홈쇼핑의 주기능 수행, 조직운영·복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복무·채용·징계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입점상품 선정절차 및 방송편성·품질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1. 08. 0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09. 01.부터 09. 14.까지 10일간 감사인원 6명(산하 공공기관 2명 포함)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09. 27부터 10. 01까지 5일간 추가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2. 01. 07.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확대하고 홈쇼핑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주) 등이 출자¹⁾하여 2015. 3. 5. 설립되었으며 2018. 2. 6.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100% 중소기업 제품으로 방송을 편성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전국 3,568만 가구에 송출하고 있고 가입 고객 수는 2021년 10월 기준 2,03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²⁾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19년 기준 20.1%의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7개 홈쇼핑사 평균 29.1% 보다 9.0%p 낮은 수치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초기 창업기업의 홈쇼핑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재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매입 거래를 확대('22년까지 275억)하는 등 공적 판로지원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조직은 2021. 9월 기준 4본부 1사업부 11실 1사무국 39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원은 정원 396명, 현원은 359명(계약직 제외) 이다.

< [표 1] 임직원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임원	4	4	4	4
직원	307	346	344	355
계약직	5	3	5	10
계(명)	316	353	353	369

1)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경제지주(주)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2) 가입 수 (만명): ('16) 562 → ('17) 838 → ('18) 1,118 → ('19) 1,384 → ('20) 1,838 → ('20.10) 2,031

2. 재무현황

(주)공영홈쇼핑 자산은 2020년 결산 기준 1,452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이고, 부채 813억 원 자본금은 639억 원이며, 총부채의 57%인 467억 원은 협력사 대금, 업체정산 예정금액 등 매입채무 부채이다.

< [표 2]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67,130	69,963	122,130
	비유동자산	17,721	20,907	23,033
	자산총계	84,851	90,870	145,163
부채	유동부채	37,603	44,523	74,818
	비유동부채	4,711	5,194	6,450
	부채총계	42,314	49,717	81,268
자본	자본금	80,000	80,000	80,000
	기타	-37,463	-38,847	-16,105
	자본총계	42,537	41,153	63,895

(주)공영홈쇼핑의 2021년 8월 기준 상품 판매액은 6,237억 원('15년 이후 누적 판매액 4조 1,837억 원)으로 연평균 약 18% 증가('16년 5,057억 원)하였으며, 누적적자도 2019년까지 △415억 원이었으나 2020년 최초 흑자를 달성하여(당기순이익 255억 원) 2021년 8월 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41억 원으로 줄었다.

< [표 3] 연도별 당기순이익 >

(단위: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8	누적
당기순이익	△190	△94	△35	△52	△44	255	12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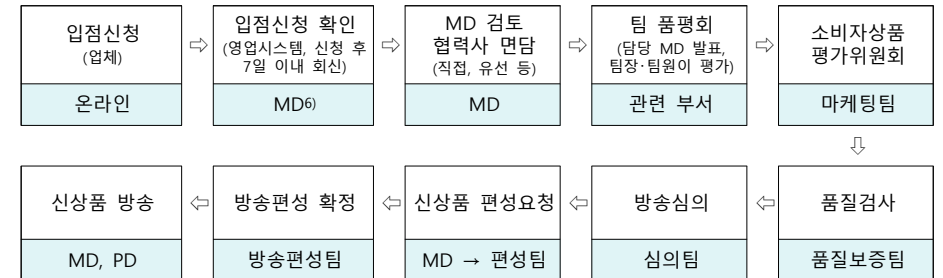
Ⅲ.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Ⅲ-1 입점 신청상품 처리 및 팀품평회 평가 부적절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의 신상품³⁾ 입점 절차는 아래 [그림 1] 와 같이 ① 입점 신청 ② 협력사 면담 ③ 팀품평회⁴⁾ 및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⁵⁾ 개최 ④ 품질평가 및 방송심의 ⑤ 방송편성 ⑥ 방송 송출의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1] 신상품 입점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사항 >

공영홈쇼핑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입점 대상)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

4) 팀 단위로 품평회를 진행하며 담당 MD가 상품을 발표하고 팀장 및 팀원들이 평가

5)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구성(14명) : 위원장 1명, 비영업 부서 담당자 3명, 외부위원 10명

6) 상품기획전문가(Merchandiser): 상품기획·발굴·개발 등 업무를 담당

< 입점 신청상품 지연·미처리 관련 >

공영홈쇼핑 「복무요령」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겸허한 자세로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7)」에 따르면 상품 입점신청 후 1주일 이내 상담일정 등을 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입점 신청상품 팀품평회 누락 관련 >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르면 자격(중소기업)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공영홈쇼핑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거래선(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에서는 입점 신청업체(상품) 전체를 팀품평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입점 신청상품 지연처리 관련

공영홈쇼핑은 업체가 상품을 입점 신청8)하면 해당 상품을 담당하는 팀 직원 모두에게 알림톡9)을 발송한다. 이후 해당 팀장이 동 상품을 담당할 MD를 지정하며, 담당 MD는 1주일 이내에 업체와 상담 일정 등을 협의하여 이를 전산(영업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2018. 1. 1.부터 2021. 7. 31.까지 총 4,289건10)의 상품을 온라인 등으로 신청받아 접수11)하였다.

7)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으로 지정(18.1.31.)된 후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18.3.19.)

* (공문기안) 마케팅팀(18.3.19.), (결재) 대표이사 공동직무대행(영업1본부장, 영업2본부장)

8) 공영홈쇼핑 홈페이지(<https://www.gongyoungshop.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9) 상품 입점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메시지 전송 시스템

10) 연도별 현황: (2018년) 1,334건, (2019년) 800건, (2020) 1318건, (2021.7월 말) 837건

11) '19년도부터 온라인 입점 신청을 개시('18년도의 경우에는 수기로 접수)

공영홈쇼핑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에서는 상품 입점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상담일정 등을 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복무요령」에서는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점 신청상품을 지연하여 처리하거나 미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아래 [표 4] 와 같이 '20년도의 경우 총 1,318건의 상품을 접수하여 이 중 29.9%인 395건을, '21년도12)의 경우에는 총 837건의 상품을 접수하여 이 중 38.3%인 321건을 미처리하거나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13)14)

< [표 4] 연도별 상품 입점 신청 등 현황15) >

(단위: 건, %)

연도	입점 신청	미처리		지연처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1318	0	0	395	30.0
2021	837	120	14.3	201	24.0
합계	2,155	120	5.6	596	27.7

자료: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지연처리('20년: 395건, '21년: 201건) 및 미처리('21년: 120건) 상품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을 점검한 결과, 아래

12) 2021년 7월 말 기준

13) 공영홈쇼핑은 입점 신청상품을 지연·미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① 업체 상담 후 상담일지 전산 입력 지연 및 오픈 접수 건 담당자 이관 ② 당시 담당자 퇴사로 확인 불가 등을 주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상담일지가 상품을 접수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업체도 입점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피드백(전화)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영홈쇼핑의 주장을 타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14) 또한 공영홈쇼핑은 지연처리와 관련하여 상담일지 작성 시 전산상 등록 가능한 항목이 2가지(진행예정, 진행불가) 밖에 없어 업체의 협의가 모두 완료된 후 “진행예정” 또는 “진행불가”로 결과를 입력하여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함 이에, 전산을 확인한 결과 등록 가능한 항목은 3가지(보완요청, 진행예정, 진행불가)로 확인되었고, 실제로도 협의 진행 중에는 “보완요청”으로 상담내용 등을 입력(상품접수 후 7일 이내)한 다음 업체와의 협의가 모두 완료된 후 “진행예정” 또는 “진행불가”로 결과를 등록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영홈쇼핑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음

15) 공영홈쇼핑은 '20. 5월 이후부터 입점 신청상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20. 5월 이전 입점 신청상품(수기로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보야 하는 등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함

[표 5] 와 같이 대다수의 입점 신청상품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리되었거나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지연처리 395건 중 31.1%인 123건과 미처리 120건 중 25.0%인 30건은 18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거나 초과했음에도 미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5] 연도별 상품 입점 신청 등 현황 >

(단위: 건)

연도	구분	소계	7일 초과 60일 이내	60일 초과 120일 이내	120일 초과 180일 이내	180일 초과
2020	지연처리	395	136	63	73	123
2021	미처리	120	18	31	41	30
	지연처리	201	154	44	3	0
합계		716	308	138	117	153

자료: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입점 신청상품 지연처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¹⁶⁾되는 등 기업 불편을 초래하였다.

나. 입점 신청상품 팀품평회 누락 관련

공영홈쇼핑은 입점 상품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품 관련 팀장과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팀품평회¹⁷⁾를 실시하여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상정 여부를 정한다.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르면 자격(중소기업)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선(협력사)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에

16) 업체에 미·지연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 다수의 업체가 입점 신청상품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답답하였다고 하는 등 불만을 제기함.

17) 팀 단위 평가(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미달일 경우 탈락)

서는 입점 신청업체(상품) 전체를 팀품평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¹⁸⁾ 없이 팀품평회 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관행적으로 MD가 입점 신청상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팀품평회 상정 여부를 정하였는데, '20년도의 경우 총 734건의 상품 중 22.6%인 166건을, '21년도¹⁹⁾의 경우에는 총 855건의 상품 중 36.7%인 314건을 MD 검토단계에서 탈락 시킴으로써 다수의 상품이 팀품평회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도별 MD 검토 결과는 아래 [표 6] 와 같다.

< [표 6] 연도별 입점 신청상품에 대한 MD 검토 결과²⁰⁾ >

(단위: 건, %)

연도	MD 검토	MD 검토 결과			
		탈락 (팀품평회 미상정)	비율	선정 (팀품평회 상정)	비율
2020	734	166	22.6	568 ²¹⁾	77.4
2021	855	314	36.7	541 ²²⁾	63.3
합계	1,589	480	30.2	1,109	69.8

자료: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MD 검토단계에서 탈락한 480개 상품에 대해 사유를 확인한 결과, 공영홈쇼핑은 ① 고객 연령층 부적합 ② 타 홈쇼핑업체 판매 효율 저조 ③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진행 불투명 등을 이유로 팀품평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입점 신청상품을 탈락 시키는 등 탈락 사유의 객관성 또한 부족²³⁾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 공영홈쇼핑 취급제품 기준에 따른 기업규모(중견기업, 대기업) 부적합 등

19) 2021. 7월 말 기준

20) [표 4]의 “입점 신청” 항목과 [표 6]의 “MD 검토” 항목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은 2020년 5월 이후부터 입점 신청상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2020년 5월 이전 입점 신청상품(수기로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봐야 하는 등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함

21)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상정: 464건, 미상정: 11건)

22)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상정: 479건, 미상정: 21건)

【관계기관 의견】

공영홈쇼핑은 “3항 가”와 관련하여 앞으로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입점 신청 상품을 미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3항 나”와 관련하여 앞으로 내부규정을 보완·준수하여 자격(중소기업)을 구비한 모든 업체가 틈품평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점 신청상품 선정 절차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 입점신청 상품이 미처리 또는 지연처리되거나 틈품평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23) MD가 입점 신청상품을 ‘고객 연령층 부적합’, ‘타 홈쇼핑업체 판매 효율 저조’ 등을 이유로 탈락(틈품평회 생략)시킨 것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❶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점 ❷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서 자격(중소기업)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❸ 거래선을 등록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이유는 공영홈쇼핑의 설립 취지는 물론 내부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Ⅲ-2 농축수산물분야 중소기업 제품 선정·판매 부적정

1. 업무 개요

(주)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축임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TV홈쇼핑을 개국하고 같은 해 10월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8년 이후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상품 수는 35,698개이며, 상품 취급액²⁴⁾은 총 2조 9,401억 원이다.

< [표 7] (주)공영홈쇼핑 입점상품 및 취급액 >

(단위: 개, 억 원, %)

구분	입점상품(개)		취급액(억원)	
		비율		비율
TV홈쇼핑	6,505	18.2	2조 8,283	96.2
인터넷쇼핑	29,193	81.8	1,118	3.9
계	35,698	100.0	2조 9,401	100.0

출처 : (주)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은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²⁵⁾에는 공영홈쇼핑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은 중소기업제품²⁶⁾만을 취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과기부가 정한 홈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홈쇼핑사업자의

24) (취급액) 상품단가 × 판매 수량, (매출액) 취급액 × 수수료율

25) 2014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서를 제출하여 2015년 4월 14일 승인

26) 공영홈쇼핑 취급제품 기준(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계획서)
 [기본개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기준, 영리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①규모의 기준(세부 제조업종별 매출액상한 범위 이내), ② 독립성 기준(기업간 계열관계 제한범위 이내), ③세부 제조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기업
 [세부정의] 농축수산물: 상기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산 식품으로 일반, 가공, 건강식품 등으로 기준함

농수축임산물 상품 기준」 27) 제2조28)에 따르면 공영TV홈쇼핑이 취급할 수 있는 농수축임산물 상품은 '중소기업 제품'에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과기부의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5조29)에는 홈쇼핑 사업자가 취급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는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제조)한 국내 농·수산물과 이의 단순가공품까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과기부에 제출한 '방송채널사용사업 계획서'와 과기부의 「홈쇼핑사업자의 농수축임산물 상품 기준」 및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종합하면 공영홈쇼핑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모두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농수산물30)과 이의 단순가공품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된다.

2. 검토 결과 및 문제점

2018년 이후 (주)공영홈쇼핑의 판매 규모는 인터넷쇼핑을 포함 2조 9,401억원 (취급액 기준)이고 판매상품 중 ΣΣ○○○, ΣΣ●●●, ΣΣ□□ 등 비영리단체 제품 124억원(전체 취급액의 0.4%)이 판매되었으며, 이 중 ΣΣ ○○○ 제품이 대부분(약 97%)을 차지하고 있다.

27) 과기부가 2015년 공시한 농수축임산물 상품 기준으로 공영홈쇼핑과 NS홈쇼핑에 적용 (15년 7월 1일 시행)
 28) 제2조(농수축임산물 상품 정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제7호에 따른 식품, 원예상품, 공예/특산물, 천연소재 상품 및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묶음상품, 농수축임산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상품,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중 생활필수품을 말한다. 단, 공영TV홈쇼핑의 경우 편성할 수 있는 농수축임산물 상품은 중소기업제품에 한정된다.
 29)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5조(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2.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서 자체 생산한 제품
 3.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4.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5. 중소기업이 기획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브랜드라이선스를 통해 타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 (대기업 및 해외기업 브랜드 포함)
 6. 국내 비영리 단체가 생산(제조)한 국내 농·수산물과 이의 단순가공품
 30) 비영리단체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범위에는 축산물·임산물까지 포함 (과기부 유권해석, '22.01.19)

< [표 8] 공영홈쇼핑의 ΣΣ 소속회사 제품 판매 현황('18년~'21.9월) >

연도	상품 수(개)		매출액(억원)	
	전체 상품	ΣΣ 소속회사	전체 상품	ΣΣ 소속회사
TV홈쇼핑	6,505	37	2조 8,283	123
인터넷쇼핑	19,193	9	1,118	1
총계	35,698	46	2조 9,401	124

출처 : (주)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상품 제외)

ΣΣ 소속회사인 ΣΣ○○○ 등은 영리 목적의 대기업이지만 ΣΣ법에 따라 비영리단체31)로 인정되며 공영홈쇼핑은 ΣΣ 소속회사의 제품이 국내 농·수산물과 이의 '단순가공품'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32)

그러나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등에는 '단순가공품'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33)하고 있진 않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가공식품'의 범위와 '가공식품'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표 9]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식품' 기준 >

법령	구분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가공식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총칙, 고시)	가공식품	· 농축수임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
	제외 기준	· 가공식품 중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축수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숙성하는 등의 처리과정 중 식품의 상태를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 제외

3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 ΣΣ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ΣΣ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32)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5조 제6호에서는 국내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축산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과정에서의 단순누락으로 판단하고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판단
 33) 과기부는 홈쇼핑사업자에 적용하는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5조 제6호에 규정한 비영리단체가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단순가공품'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기준은 없으며 해당 기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면 된다는 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식육³⁴⁾ 가공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 「식품공전³⁵⁾」에 따르면 농축수입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가공식품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 절단하여 식품의 상태를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식품에서 제외³⁶⁾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단순 가공식품’은 농수축임산물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탈곡·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 등 ‘가공식품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공영홈쇼핑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별다른 검토나 근거 없이 판매 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QQ햄, YY햄, 비엔나 등 가공식품류를 포함한 ΣΣ○○○ 제품 약 121억 원을 판매하였다.

34)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35)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3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표 10]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ΣΣ○○○ 제품 >

(단위 : 억 원)

구분	상품명	취급액
TV홈쇼핑	WW햄, EE삼계탕, RR등심스테이크, TTT돈까스 등	120
인터넷쇼핑	QQ햄 YY햄, UUUUUU 등	1
계		121

출처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18.1월~’21.8월)

【관계기관 의견】

공영홈쇼핑은 단순가공품을 가공식품 중에서 공정이 단순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 「식품공전」에서의 단순처리 농산물은 가공식품과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개념으로써 세척·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등 처리·유통·소비과정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품목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단순가공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고, 제조공정³⁷⁾이 복잡한 햄류·소시지류 등을 단순가공품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못 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햄, 소세지 등을 ‘가공식품’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영홈쇼핑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공영홈쇼핑 자체감사 처분결과 재심 신청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에는 단순가공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에 가공식품을 명확하게 기술하고는 있지만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공품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단순가공품 기준 해석상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공

37)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발행한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식육가공품」(2020.11.)에 따르면 햄류의 제조공정은 “부위정형/분쇄-염지/혼합-성형/충진-훈연/가열/냉각/숙성/건조-슬라이스-포장”, 소시지류의 제조공정은 “분쇄-염지및혼합-세절및유회-충진-훈연및가열-숙성및건조-슬라이스-포장”의 단계로 구분된다.

영홈쇼핑이 가공품과 단순가공품 기준을 마련하여 입점 상품을 선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공품과 단순가공품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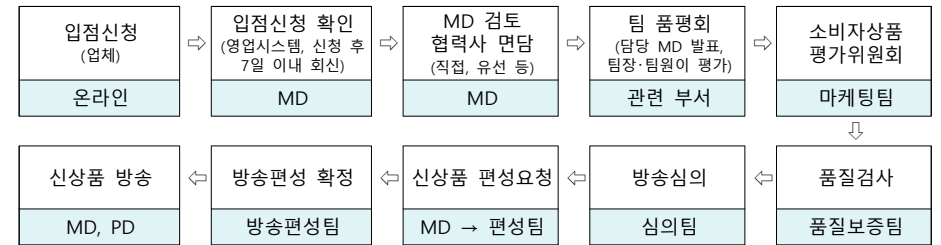
III-3 차수변경 운영 부적정

1. 업무 개요

(주)공영홈쇼핑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15년 3월 설립되었고 2015년 4월 과기부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³⁸⁾을 받은 후 2015년 7월 TV홈쇼핑 방송을 개국하였다.

TV홈쇼핑 입점은 입점신청 제품에 대해 MD 검토³⁹⁾와 팀품평회⁴⁰⁾ 합격한 상품을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⁴¹⁾(이하 ‘상선위’)에 상정하여 최종 심사를 받고, 상선위 평가에 합격한 제품은 품질검사와 방송심의·편성이 확정된 이후 TV 방송이 가능하며, 통상 입점 신청부터 TV 방송까지 약 2개월 이상 소요된다.

< [그림 2] 공영홈쇼핑 상품 입점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모든 입점신청 상품은 상선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차수변경’ 상품과 같이 기존상품 중 디자인·소재·기능 등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상품의 변경모델로 보고 상선위 심사를 생략하고 있다.

38)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승인을 3년('15.4.15 ~ '18.4.14) 받은 후 '23.4.15까지 5년 재승인
 39) 협력사가 제안한 상품에 대해 고객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협력사와 협의하고 홈쇼핑 방송에 적합하도록 판매가격, 상품구성, 디자인 등을 기획 또는 재구성하여 팀품평회에 상정
 40) 팀별 팀장과 MD들이 참여하며 팀품평회 평가항목은 가격, 구성, 품질, 고객층, 상품기준
 41) 위원회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일반 소비자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하고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외부위원 임기는 모두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차수변경 상품은 MD 검토 등을 거쳐 실장⁴²⁾ 전결로 선정되며 2018년 이후 차수변경 상품은 707개로 공영홈쇼핑 전체 상품의 20.9% 규모다.

< [표 11] 연도별 신상품 및 차수변경 선정 현황 >

(단위 :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7월		계	
		%		%		%		%		%
신상품	511	51.9	274	39.8	531	48.3	397	65.0	1,713	50.6
차수변경	192	19.5	171	24.8	224	20.4	120	19.6	707	20.9
긴급선정	3	0.3	0	0.0	80	7.3	0	0.0	83	2.5
상생방송	279	28.3	244	35.4	265	24.1	94	15.4	882	26.1
계	985	-	689	-	1,100	-	611	-	3,385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은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세부운영 지침(’20.12.21제정)」에 따라 상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우수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상선위를 운영하여야 하며, 상선위는 상품선정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세부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개국한 2015년부터 규정화된 지침 없이 ‘차수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8년도에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⁴³⁾」을 마련하여 차수변경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반영 내용이 “기존운영 상품의 디자인·소재·기능 등 일부가 변경된 경우 기존상품으로 본다”는 추진근거 정도로 간략히 설명되어 있을 뿐 규정화된 지침은 없다.

42) 중소기업 제품을 담당하는 영업1실장과 식품을 담당하는 영업2실장 등 총 2명

43)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상품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창의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상품절차 개선안 마련 (’18.3.19, 대표이사 공동직무대행 VVV, 김정호 공동결재)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은 상품선정 시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상선위 심사를 생략하는 차수변경은 보다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이 2018년에 마련한 「상품선정 절차 개선안」의 차수변경 근거를 마련하면서 상품군별⁴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기준이 없어 입점신청 상품이 차수변경 대상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8년 이후 차수변경 상품의 가격, 구성 등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차수변경 상품 대부분이 의류상품⁴⁵⁾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선정상품 중 차수변경 요건(디자인·소재·기능 일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의 가격과 구성까지 변경하여 차수변경 상품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2] 가격과 상품 구성까지 변경한 차수변경 상품(사례) >

구분	브랜드(선정일)	상품 구성		가격(천원)
		신상품	차수변경	
가격 변경	보\$\$ (’18.6.11)	신상품	밍크코트	1,590
		차수변경	롱코트	3,290
	미\$\$\$ (’18.7.30)	신상품	무봉제 다운점퍼	79
		차수변경	구스다운 웰팅점퍼	199
	요\$\$\$\$ (’18.7.19)	신상품	트렌치 코트	89
		차수변경	구스다운 코트	349
크\$\$\$ (’20.3.31)	신상품	악어백	898	
	차수변경	악어백	1,580	
상품구성 변경 (가격변경 포함)	바\$\$\$\$ (’21.4.9)	신상품	팬츠 3종	39
		차수변경	팬츠 4종	59
	지\$\$\$\$ (’21.4.6)	신상품	상하의 4종	39
		차수변경	상하의 2종	89
	크리\$\$\$\$ (’21.4.15)	신상품	월피스1종 + 가디건1종	39
		차수변경	월피스 3종	49
제시\$\$\$\$ (’19.10.15)	신상품	정수리가발1종 + 에센스1종	69	
	차수변경	정수리가발1종 + 에센스1종 or 스타일가발1종 + 에센스1종	79 89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44) 23개 상품군 : 신선농산, 가공농산, 신선수산, 가공수산, 신선축산, 가공축산, 건강식품, 가전, 레포츠기기, 레포츠용품, 레포츠의류, 문화서비스, 보석, 상조, 생활용품, 소개, 언더웨어, 의류, 이미용, 인테리어, 잡화, 주방용품, 침구

45) 신상품 중 의류상품 비율은 23.8%이며 차수변경 상품 중 의류상품 비율은 74.1%

상품의 구성과 가격은 신상품 선정에서 중요한 심사기준⁴⁶⁾이며, 차수변경 상품의 디자인·소재가 변경된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일부 상품의 가격이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은 차수변경 선정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차수변경 선정 이유도 대부분 ‘기(既)진행 방송 브랜드로 디자인·소재가 변경되어 차수변경을 진행함’ 등으로 간략하게 검토⁴⁷⁾되었을 뿐 상품의 디자인·소재 등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이지 않아 차수변경 선정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공영홈쇼핑의 차수변경 선정 관행은 선정기준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품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TV홈쇼핑 특성상⁴⁸⁾ 연간 방송할 수 있는 상품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차수변경과 같은 모델변경 상품의 운용은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위해 오랜 투자 노력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홈쇼핑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점 기회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

【관계기관 의견】

현재 차수변경 기준이 상품군마다 특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팀품평회 또는 별도 차수변경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 차수변경 상품의 가격변경 및 상품구성 허용범위 등을 포함한 품목별 차수변경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차수변경이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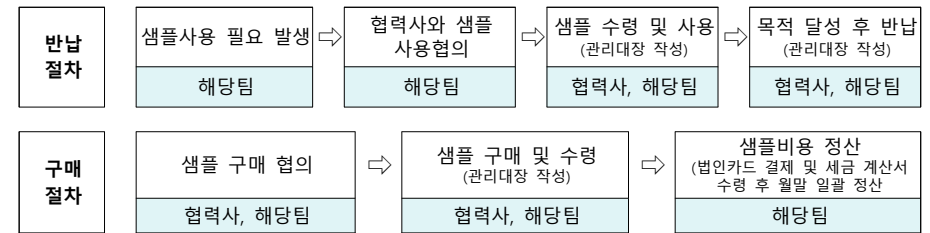
46) 상품의 구성과 가격은 상선위의 신상품 평가에서 35점으로 비중이 높아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심사항목(100점) : 주고객층 어필(20), 가격경쟁력(20), 품질·디자인·기능(20), 구성(15), 트렌드(15), 방송 시연성(10)
 47) 차수변경 내부 품의서에는 차수변경 이유, 방송예정일, 상품사진(기존, 신규) 구성, 가격 등 포함
 48) TV홈쇼핑은 24시간 방송(일반적으로 상품당 1시간 방송) 되고 상품당 방송 횟수는 약 10회(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1~130여 회) 방송하고 있어, 연간 방송이 가능한 상품 수는 약 8백여 개(추정)

III-4 샘플관리 부실 운영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⁴⁹⁾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17조⁵⁰⁾에 따라, 샘플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 01. 23. 「샘플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 [그림 3]의 절차와 같이 샘플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 [그림 3] 샘플 사용 및 관리 절차 >



2. 관련 법령 등 판단기준

공영홈쇼핑 「샘플관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샘플의 구매대장과 관리대장⁵¹⁾은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의 첨부 서식인 ‘샘플관리대장’을 보면 샘플을 반납할 경우 반납일자, 인계자 및 인수자명, 택배발송은 송장번호를 기재하고 월별로 담당자와 부서장(팀장)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49)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의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0)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51) 「샘플관리기준, 첨부 서식의 샘플 구매대장과 관리대장(예시)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 내에서 협력사 등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사용하는 부서는 총 7개 팀⁵²⁾이며, 그 중 5개 팀(a1·2팀, b 1·2·3팀 등 e부서)은 소비자상품선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시연, 체험 등 품평회 목적으로, c팀은 상품방송 전 품질검사 목적으로, d팀은 고객불만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샘플을 사용하고 있었다. 부서별 샘플사용 현황은 아래[표 13]와 같다.

< [표 13] 부서별 샘플 사용 후 관리 현황(2018. 1. 1. ~ 2021. 7. 31.) >

부서	대여 샘플(건)		구매 샘플 ⁵³⁾ (건)	합계	
	반납	폐기			
a1팀	312	56	256	0	312
a2팀	266	0	266	0	266
b1팀	413	401	12	0	413
b2팀	201	194	7	0	201
b3팀	32	32	0	0	32
c팀	1,811	661	1,150	757	2,568
d팀	0	0	0	214	214
합계	3,035(76%)	1,344	1,691	971(24%)	4,006(100%)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협력사 등으로부터 대여받거나 구매한 샘플에 대한 직원들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샘플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한 샘플을 사용한 후 반납이 어렵거나 구매한 샘플을 사용 후 폐기 등 처리하는 경우에도 샘플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협력사 등으로부터 샘플을 대여받거나 구매한 샘플을 사용하는 대부분 부서에서 「샘플관리기준」 상의 처리기준이나 서식대로 샘플을 관리

52) a1팀, a2팀, b1팀, b2팀, b3팀, c팀, d팀 등 7개 부서

53) 구매한 샘플의 경우, c팀은 사용 후 전량 폐기(폐기된 샘플사진과 함께 폐기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d팀은 소모성 샘플(식품, 이미용 등)은 폐기(폐기된 샘플 사진 보관)하고 이외의 샘플은 검수를 통해 폐기하거나 복지관 등에 기부하고 있었음(샘플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폐기한 샘플의 경우, 폐기 샘플 건수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4/55)} 또한, 식품류 샘플이나 소모성 샘플(세제, 이미용 등)의 경우 관능검사 등 사용 후 샘플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협력사 동의하⁵⁶⁾에 반납 대신 폐기⁵⁷⁾하고 있었으며, 구매한 샘플의 경우에는 사용 후 대부분 폐기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기준 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⁸⁾

그 결과 협력사 등으로부터 대여받거나 구매한 샘플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⁵⁹⁾

【관련자 의견】

공영홈쇼핑은 현 실정에 맞게 샘플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구매·대여받은 샘플을 사용하고 반납, 폐기 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샘플구매대장 및 관리대장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② 샘플 폐기처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샘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54) 공영홈쇼핑의 a1·2팀, b1·2팀은 협력사 등으로부터 대여받거나 구매한 샘플에 대한 사용실적을 「샘플관리기준」의 샘플구매대장 등의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별도 서식인 샘플입반출상황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식은 샘플 반납시 인수자나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월별 담당자·팀장의 서명도 확인되지 않았음. d팀의 경우도 규정에 없는 별도 서식으로 샘플 사용 등 기록·관리하고 있었음.

55) 품질관리팀은 샘플관리에 있어 규정의 서식인 샘플관리대장 및 샘플구매대장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반납샘플대장과 폐기샘플대장으로 샘플 사용 등에 대해 기록·관리하고 있었으며, b3팀은 규정의 서식인 샘플관리대장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었음(샘플을 구매한 실적이 없어 구매대장은 미존재)

56) 샘플폐기 실적이 있는 e부서 4개팀과 c팀은 샘플폐기 시 협력사 등과 협의하여 폐기하고 있으며, 협력사 등이 공영홈쇼핑 측에 폐기처리 해 줄 것을 원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등 타 홈쇼핑도 샘플 폐기는 홈쇼핑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 품질관리Zq1 진술)

57) 샘플폐기비율 : a 1팀 82%, a2팀 100%, c팀 74% 등

58) c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샘플폐기관리대장과 함께 쓰레기봉지에 폐기된 샘플 이미지를 보관

59) 직원들이 협력사로부터 샘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5개 협력사와 면담한 결과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샘플을 부당하게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

III-5 대체방송상품 선정·관리 미흡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의 방송반납(취소)⁶⁰⁾ 등에 따른 대체방송상품 선정 절차는 아래 [그림 4] 와 같이 ① 방송반납 신청 ② 방송반납 현황 공지 ③ 상품 제안 ④ 제안상품 검토 및 상품선정 ⑤ 상품선정 결과 공지 ⑥ 방송 송출의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4] 대체 방송상품 편성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편성원칙」에서는 대체방송상품 선정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편성원칙		
■ 국내 제조상품 등 우선 고려		
구분	직전 또는 2회 생방송 평균	
(1순위) 취급액 달성률, (2순위) 종합 달성률 ⁶¹⁾	80% ~ 89% (비프라임)	90% 이상 (프라임 ⁶²⁾)
* 직전 2회 달성률이 기준 미달일 경우 편성 배제(단, 상품력 보강 시 요청 가능)		

자료 : 공영홈쇼핑 「편성원칙」 일부 발췌

- 60) (방송반납 사유) 협력사 생산 지연 및 상품 재고 부족, 게스트 일정 변경, 현장 QA 부적합 등
 61) 취급액 달성률은 목표판매액 대비 판매액 달성률이며, 종합 달성률은 취급액 달성률에 공헌이익률을 더한 값으로써 공영홈쇼핑은 취급률과 이익률을 모두 고려하고자 2순위인 종합 달성률을 1순위로 반영하여 상품을 선정함
 62) (프라임) 평일 : 09~10시, 20~22시, 주말 : 06~17시, 18~24시, (비프라임) 프라임 외 시간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편성팀)은 담당 MD가 방송반납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공문)하여 텔레그램(메신저)⁶³⁾⁶⁴⁾에 해당 내용(방송 시간 등)을 공지하고, 여타 MD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을 제안한다. 이후 편성팀은 위 MD들이 제안한 상품들의 직전 방송실적(목표판매액 대비 실제 판매액) 등을 비교·평가하여 대체방송상품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편성팀은 2018. 1. 1.부터 2021. 7. 31.까지 총 1,067건의 상품을 선정하였다.

공영홈쇼핑은 대체방송상품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편성원칙」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이 선정한 총 1,067건의 대체방송상품 중 9.8%인 105건⁶⁵⁾은 직전 방송실적(목표판매액 대비 실제 판매액)이 낮은 등 「편성원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 14] 와 같다.

< [표 14] 연도별 대체방송상품 선정 현황 >

(단위 : 건, %)

연도	총건수	총건수 중 기준 미충족 건수	비율
2018	353	25	7.1
2019	332	47	14.2
2020	282	21	7.4
2021	100	12	12.0
합계	1,067	105	9.8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 63) 텔레그램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거나 데이터를 즉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시스템으로써 동 업무 관련자 60여 명(편성팀장, MD)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음
 64) 공영홈쇼핑은 동 업무를 텔레그램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6년 당시 담당자가 동 업무를 텔레그램으로 진행하여, 이를 감사일(2021년 11월)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을 뿐 특별한 이유가 있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아울러 당초 동 업무를 텔레그램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2016년 당시 담당자가 퇴사(2019. 11. 29.)함에 따라 확인이 곤란하다고 진술함
 65) 「편성원칙」의 기준대로 공영홈쇼핑이 2순위로 반영하였던 “취급액 달성률”을 1순위로 반영할 경우 총 1,067건의 선정 상품 중 48건(4.5%)이 기준에 미충족되는 것으로 확인

이에 따라 위 105개 상품에 대해 선정 사유를 점검한 결과 KF94 마스크·창문형 에어컨 등 44개 상품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적 물품 우선 편성, 계절 이슈에 따른 경쟁사 히트 상품 편성, 갑작스러운 방송반납에 따른 긴급 편성 등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된 반면, 밀폐 용기 세트 등 나머지 61개 상품(66)은 당시 기록이 없어 객관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상품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공영홈쇼핑은 앞으로 방송반납(취소) 관련 대체방송상품 선정 시 MD가 제안한 상품 리스트 및 선정 사유를 기록·관리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 방송반납(취소) 관련 대체방송상품 선정 시 MD가 제안한 상품 리스트 및 선정 사유를 기록·관리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66) 공영홈쇼핑은 대체방송상품 선정 시 MD가 제안한 상품들을 비교·평가하여 선정하는데 MD 제안 상품(기준 미충족)이 1개 이하 이거나, 제안 상품 모두가 편성원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편성원칙 기준에 미충족되는 상품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선정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등 상품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D가 제안한 상품 리스트 및 선정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방송일에 촉박하여 방송반납(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시급하게 상품을 선정해야 하는 등 메신저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고 한다.) 종합감사(감사기간: 2018. 9. 3.~9. 14.)에서 승진인사제도 운영 부실 등과 관련하여 기관경고 등 총 21건(67)의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았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기부 「감사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처리기한(68)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한내 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Z실)은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2018. 11. 30. 접수하여 같은 해 12. 19. 허팀 등 현업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계획 등을 제출(메일)받아 일괄 취합한 후 중기부로 회신(69)하였다.

위 「감사규정」에 따르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공영홈쇼핑은 중기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7) 기관주의·경고(4건), 시정요구(3건), 통보(5건), 개선요구(5건), 개인주의(3건), 권고(1건)

68) 시정 및 개선요구·권고·통보(2개월 이내), 징계 또는 문책요구(1개월 이내)

69) (1차 회신) 2019. 1. 28. (2차 회신): 2019. 3. 8.

그런데 공영흡소평은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총 21건의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고서도 이 중 “의료비·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승진인사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2건⁷⁰⁾(훙팀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일(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조치 중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건에 대해 미조치 사유 등을 확인한 결과, 조치 중인 사안(“의료비·복지포인트 통합 운영”)의 경우 노사 간 협의⁷¹⁾가 무산되었다가 2021년 4월이 되어서야 협의가 재개⁷²⁾되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된 반면 미조치한 사안⁷³⁾(“승진인사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동 지적사항을 인지⁷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영흡소평의 승진인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영흡소평은 2019년 4월, 2020년 6월 및 2020년 11월 총 3회의 승진인사⁷⁵⁾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① 승진계획(승진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⁷⁶⁾되고 있었고, ② 승진 결원에 대한 승진후

- 70) 조치 중: 의료비·복지포인트 통합 운영(권고), 미조치: 승진인사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통보)
 71)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 개폐 시에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불이익한 변경 시에는 조합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음
 72) 공영흡소평은 동 사안 등에 대해 2019년 3차례, 2020년 2차례 노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었고, 2021년 4월 노조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협의가 재개되었다고 진술
 73) 중기부는 공영흡소평의 불투명한 승진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제도 운영방안(승진계획 사전공지, 승진 배수 운영, 회의록 작성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통보(2018. 11. 28.)하였고, 공영흡소평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인사규정 개정 등 노조협의를 필요한 사항은 노조협의를 거쳐 연내 개선 후 보고 예정)을 마련하여 2019. 1. 28. 및 2019. 3. 8. 중기부에 회신함.
 74) ◀◀◀ ZZq은 중기부 1차(2021.9.30.) 면담에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승진인사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2021.12.6.) 면담에서는 전임자로부터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승진인사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을 전달받아 내용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
 75) 2019년 및 2020년 직급별 승진자 현황 (2021년도는 승진 인사 미실시)

연도	승진 구분	승진 결원	승진 후보자	승진 배수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승진자 (C=A+B)
					순위권 내 승진자(A)	순위권 밖 승진자(B)	비율	
19년	4급 → 3급	3	28	9.3	3	0	0%	3
	5급 → 4급	6	36	6.0	3	3	50%	6
	6급 → 5급	15	52	3.5	6	9	60%	15
20년	6급 → 5급	17	46	2.7	13	4	24%	17
	7급 → 6급	5	31	6.2	1	4	80%	5
	5급 → 4급	8	50	6.3	6	2	25%	8

보자 배수의 격차(최저: 2.7배수, 최고: 9.3배수)가 크게 나타나는 등 승진후보자 배수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③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이 없어 승진후보자 명부의 낮은 순위⁷⁷⁾에 있는 직원들⁷⁸⁾이 승진한 것과 관련하여 승진 사유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승진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이 여전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관계자 의견】

◀◀◀ ZZq⁷⁹⁾은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승진인사 관련)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전임자로부터 동 사안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동 지적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Z 담당 부서장으로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승진 등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임자⁸⁰⁾가 ◀◀◀ ZZq에게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 관련 승진인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 ZZq도 중기부 1차(2021. 9. 30.) 면담에서와 달리 2차(2021. 12. 6.) 면담에서 전임자로부터 승진인사 관련 지적사항을 전달받아 내용 자체는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Z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 지적사항을 인지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감사일(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조치하지 않고

- 76) 직원들은 승진 결과만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승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진술
 77) 공영흡소평은 「근무평정요령」에 따라 연 1회 ① 조직성과 ② 개인성과(공통역량·리더십 역량) ③ 표창, 징계 등에 대한 가·감점을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78) 2019년도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후보자 52명 중 38위(TeTeTe \), 45위(@@ @ \), 47위(*** \), 49위(㉸㉸㉸ \)를 포함하여 총 15명이 승진하였고, 2020년도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승진후보자 22명 중 15위(㉸㉸㉸ Zm), 16위(AA Zm), 18위(BBB Zm)를 포함하여 총 5명이 승진한 것으로 확인됨
 79) ◀◀◀ Zq(PZk 직무대행) ZZq 재직 기간: 2019. 4. 10.~현재(2021년 12월) 재직 중
 80) 전임 ZZq(f위원회: ◻◻◻ &&), 전임 PZk(트센터: CCC)

그대로 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지적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치하지 못하였다는 ◀◀◀ ZZq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징계요구 양정】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 Zq의 행위는 중기부 「감사규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2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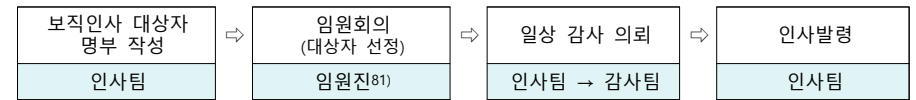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2018년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승진인사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처분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승진 절차를 진행한 ◀◀◀ Zq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Ⅲ-7 부서장 직무대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의 부서장 보직은 경영지원본부장 등 총 60개이며, 보직인사 절차는 아래 [그림 5] 와 같이 ① 보직인사 대상자 명부 작성 ② 임원회의 ③ 일상 감사 의뢰 ④ 인사발령의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5] 보직인사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직제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부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지정하는 한편 동 규정 및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직제 및 직위 순⁸²⁾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회(115명)⁸³⁾의 보직인사를 진행하면서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목적으로 아래 [별표 1] 와 같이 3급 내지 4급 팀원 14명을 실장·팀장급 부서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공영홈쇼핑은 위 「직제규정」 에 따라 부서장에게 사고⁸⁴⁾가 발생한 경우에

81) 대표이사, 상임이사 2명, 계약직 본부장 2명

82) 대표이사, 감사,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무기계약직 순(順)

83) (보직인사 횟수/발령 인원) 2019년(9회/79명), 2020년(2회/22명), 2021년 11월 기준(4회/14명)

84)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해설집에서는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한하여 직무대행을 직위 순으로 지정하되 직무상 공백 최소화라는 등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⁸⁵⁾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영흡소평은 직무대행 지정 당시 기존 부서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직제규정」을 임의로 해석⁸⁶⁾하여 ≡(4급) 등 14명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 15]와 같이 직무대행 지정 당시 보직이 없는 3급 이상 직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4급 직원을 직무대행으로 지정⁸⁷⁾하는 등 직제 및 직위도 고려하지 않았다.

< [표 15] 실장 직무대행 지정 당시 무보직 3급 이상 직원 수 >

(단위 : 명)

구분	보직일	직무대행 지정 당시 보직이 없는 3급 이상 직원 수
1	2021.04.30	27
2	2019.12.26	32
3	2020.06.29	28

주: 감사일(2021년 11월) 현재 기준 무보직 3급 이상 직원 28명
 자료: 공영흡소평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비롯하여 공영흡소평은 위 [표 15]와 같이 부서장 결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일(2021년 11월) 현재 기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 동안 위 14명에 대한 직무대행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공영흡소평은 앞으로 직무대행은 부서장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제 및 직위 순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5) 부서장 결원 보충 시 해제

86) 공영흡소평은 직무대행을 지정하면서 「직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

87) 공영흡소평은 보직발령 당시 부서장 보직에 맞는 적당한 경력의 직원이 보이지 않았고, 젊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하위직급인 팀장급을 상위직급인 실장급 직무대행 등으로 지정하였다고 진술

【조치할 사항】 공영흡소평 대표이사는 앞으로 직무대행은 부서장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제·직위 순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별표 1]

< 부서장 직무대행 현황 >

구분	부서	성명	직급	보직일	직위
1	-	ㄱㄱㄱ	3급	2021.04.30.	실장대행(5명)
2	-	+++	4급	2019.12.26	
3	-	###	4급	2020.06.29	
4	-	ㄱㄱㄱ	4급	2020.06.29	
5	-	◀◀◀	4급	2020.06.29	
6	-	bbb	4급	2019.12.26	팀장대행(9명)
7	-	jjj	4급	2020.06.29	
8	-	♪♪♪	4급	2020.06.29	
9	-	♫♫♫	4급	2020.06.29	
10	-	☎☎☎	4급	2020.06.29	
11	-	NºNºNº	4급	2020.06.29	
12	-	CaCaCa	4급	2020.06.29	
13	-	TM TM TM	4급	2020.06.29	
14	-	@@@	4급	2021.04.12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Ⅲ-8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은 임원의 경우 「공영홈쇼핑 임원복무규정」(이하 “임원복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직원의 경우 「공영홈쇼핑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출·퇴근, 출장, 휴가,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가. 임원복무 관련

공영홈쇼핑 「임원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임원은 국내출장시 대표이사에게 출장목적·기간 등을 원칙적으로 사전보고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출장은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여 출장목적·장소·시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감사)는 본인 판단하에 출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서울, 경기도, 인천 등 근거리⁸⁸⁾ 출장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직원복무 관련

공영홈쇼핑 「취업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부하를 지도·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88) 「공영홈쇼핑 여비기준」에 따른 근거리 기준 : 서울전지역, 인천시 전지역, 경기도 일부(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등 근무지로부터 근거리 수도권 내 지역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소속장은 근태확인책임자로서 직원의 출근상태 및 근무상황에 대한 확인과 관리의 책임을 진다.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하는 때는 신속히 소속장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에 합당한 종류의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조퇴·외출 시에는 사전에 근무 상황기록부에 시간·용무·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출퇴근 기록은 지문인식 방식, 전자카드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태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Z담당부서에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임원의 출장복무 부적정

2021. 9. 1. 감사일 기준 공영홈쇼핑의 임원은 대표이사(공석)⁸⁹⁾, ㉠㉠㉠ 상임감사⁹⁰⁾, ㉡㉡㉡ 전임 ㉢본부장(이하 “㉣㉣㉣ 본부장”이라 한다)⁹¹⁾, ㉤㉤㉤ e본부장(이하 “㉥㉥㉤ 본부장”이라 한다)⁹²⁾ 등 4명이다.

공영홈쇼핑 임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는⁹³⁾ 전자문서 등에 출장내역을 기록하는 등 임원으로서 누구보다⁹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89) MMM 現 대표이사는 2021. 9. 10. 입사하였으며, 2021. 2. 1.부터 같은 해 9. 9.까지 ㉦㉦㉦ nnn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였음.(㉧㉧㉧ 전임 대표이사는 2021. 1. 31. 퇴사)

90) ㉠㉠㉠ xxxx는 2021. 3. 30. 입사하였음(㉡㉡㉡ 전임 xxxx는 2021. 3. 11. 퇴사)

91) ㉢㉢㉢ 전임 ㉣??? (現) 퇴사: 2018. 10. 1. ~ 2021. 9. 30.

92) ㉤㉤㉤ 전임 ㉥??? : '19. 7. 15. ~ 현재(2021. 11. 8. ㉦??? 발령)

93) 공영홈쇼핑 임원은 업무상 국내출장이 있을 경우 n실 직원 등에 통보하고 대부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94)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공공기관의 임원에게는 입사 시 직무청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두어 임원의 경영윤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공영홈쇼핑 임원 전용차량 운행일지⁹⁵⁾와 출장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 ???은 10건, ㉧㉧㉧ ???은 49건이 차량운행일지 상 업무용 운행으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출장신청 또는 결재문서나 출장내역이 기록된 문서는 보이지 않았다.⁹⁶⁾ 공영홈쇼핑 임원의 출장내역은 아래 [표 16]와 같다.

< [표 16] 공영홈쇼핑 임원의 출장 내역(2021. 1. 1. ~ 7. 31.) >

임원명	출장내역(건)	전용차량 업무용 운행			비고	
		계	근거리	국내		
㉦㉦㉦	-	0	9	9	0	퇴사(21.1.31)
㉧㉧㉧	-	10	34	24	10	퇴사(21.3.11)
㉡㉡㉡	-	2	40	38	2	입사(21.3.30)
㉢㉢㉢	-	1(대중교통)	10	10	0	퇴사(21.9.30)
㉤㉤㉤	-	0	49	47	2	입사(19.7.16)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누구보다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임원들이 출장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별개로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의 경우 중소기업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⁹⁷⁾ 사규에서 근거리 출장 내용 기록 생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출장업무 투명성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나.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부서장)의 근태관리 부적정

공영홈쇼핑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출근이나 퇴근시 지문이나 전자카드

95) 차량운전자는 「공영홈쇼핑 차량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운행기록일지를 기록·제출하고 있었음

96) ㉦㉦㉦ ??? 및 ㉧㉧㉧ ???은 국내출장 시 출장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였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출장 시 n실에 통보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진술하였음. ㉧㉧㉧ ???의 출장내역을 기록·관리하는 q n는 “21년의 경우 ㉤㉤㉤ ???이 출장이 있었는지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

97)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중소기업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은 모든 임원에 대해 근거리를 포함한 국내출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식·기록하도록 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ERP⁹⁸⁾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장·연차·유연·재택근무⁹⁹⁾ 신청 및 결재 등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직원 중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팀장, 센터장, 실장 등 부서장, 이하 “부서장”이라고 한다.)은 총 50명(2021. 9. 1. 감사일 기준)이며, 이들은 직원의 근태확인책임자이자 부서원을 항상 성실히 지도·통솔함과 동시에 직무를 술선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근태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서장 50명에 대해 2021. 5.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¹⁰⁰⁾ 총 4개월간 출·퇴근기록을 확인한 결과¹⁰¹⁾, 아래 [표 17]와 같이 ▶▶▶ ?? 등 10명은 각각으로 추정되는¹⁰²⁾ 기록이 6회¹⁰³⁾, 퇴근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29회¹⁰⁴⁾가 있는 등 총 35회에 대해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근태기록을 소홀히 하였다.

98)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통합시스템을 말함

99) 재택근무 출퇴근 기록은 공영홈쇼핑 공영넷(내부 인트라넷) 접속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0) 2021.4월 공영홈쇼핑 ㄷ실이 출·퇴근 준수 등 복무를 철저히 하도록 전직원에게 공지하여 조사기간을 2021.5.1.부터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시작 직전 월(8.30.)까지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경우 감사여력 부족 등으로 전직원 대상이 아닌 근태확인책임자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음

101) 원칙적으로 출근 및 퇴근은 지문인식 또는 전자카드인식 기록사항을 확인하였고, 출장·휴가 등 근태는 제외하고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영넷·ERP로그기록, 전자문서 발송이나 결재기록, 내부 메일 확인이나 발송 기록,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5회에 걸쳐 개인소명 및 기타 증빙자료를 받았음

102) 공영홈쇼핑은 기관 내 출입게이트는 없으며, 입실 시 지문이나 전자카드인식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지만, 퇴실 시 지문이나 전자카드인식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출근의 경우 출근시 최초 지문이나 전자카드가 인식된 시간에 대해 기록을 확인하였음. 아울러, 관련자에 대해 5회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 &&, ☎☎☎ &&, ㄷㄷㄷ == 등은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시 출근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 ??은 한번 지각한 것은 기억은 있으나 출근기록에 있는 1시간이상 지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ㄷㄷㄷ Zk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103) 출입 기록이 있는 경우 10분 이내 지각·조퇴와 출입 기록이 없는 경우 20분 이내 전자결재·메일발송·ERP로그기록·사내메신저 발송기록 등 객관적 기록은 제외하였음

104) 퇴근기록 누락자 중 ▶▶▶ ??, ☎☎☎ ??, ▲▲▲ &&, ☎☎☎ &&의 경우 조기퇴근한 기억이 없거나 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퇴근기록 누락이 많은(8회) ▶▶▶ ??의 소속 직원 2명은 ▶▶▶ ??이 무단조퇴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상급자인 ▷▷▷ ???은 ▶▶▶ ??의 평소 행실을 보았을 때 무단조퇴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음

< [표 17]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부서장 현황(2021. 9. 1. 기준) >

소속	성명	직위	직책	지각 기록(회)	퇴근기록 누락(회)	합계(회)	비고
-	ㄷㄷㄷ	-	-	1	-	1	1 ~ 4회
-	ㄷㄷㄷ	-	-	-	2	2	
-	ㄷㄷㄷ	-	-	-	2	2	
-	ㄷㄷㄷ	-	-	-	2	2	
-	ㄷㄷㄷ	-	-	1	1	2	
-	☎☎☎	-	-	-	3	3	
-	☎☎☎	-	-	1	3	4	
-	▲▲▲	-	-	2	3	5	5회 이상
-	☎☎☎	-	-	-	5	5	
-	▶▶▶	-	-	1	8	9	
합계				6	29	35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서원에 대해 근태를 관리·점검해야 할 부서장들이 본인의 근태기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근태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직원 출·퇴근시 지문이나 전자카드의 인식·기록이 누락될 경우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근태의 투명성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관계자 의견】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근태 등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출장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 ???과 근태기록을 5회 이상 누락한 ▶▶▶ ??, ☎☎☎ ??, ▲▲▲ &&에 대해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¹⁰⁵⁾ (경고)

[관련자] ▷▷▷ ???, ▶▶▶ ??, ☎☎☎ ??, ▲▲▲ && (4명)

② 앞으로 대표이사 및 상임감사의 근거리 출장내역을 기록·관리하시고, 직원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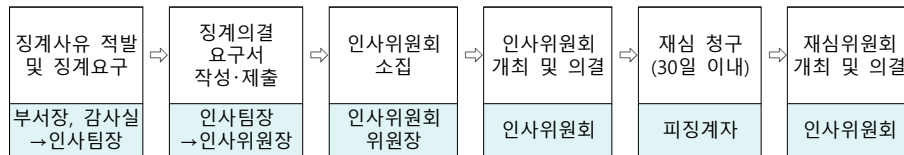
105) 출장내역을 기록하지 않은(10회) ㄷㄷㄷ ???은 임기만료로 퇴사('21. 9. 30.)함에 따라 별도 처벌받지 않았음

III-9 파견기간 종료 후 원소속 미복귀 직원 징계과정 등 부적정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의 징계절차는 아래 [그림 6]와 같이 ① 징계 요구 ② 인사위원회 소집¹⁰⁶⁾ ③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④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 개최 및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6] 징계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취업규칙」 제9조 제6호에 따르면 정당한 회사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공영홈쇼핑 근로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치하는 부서에 근무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출이나 전보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게 하고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⁰⁷⁾

106) 위원장(대표이사), 위원(상근이사 전원, 외부위원), 간사(인사팀장) 등 7인 이내로 구성

107) 아울러, 「공영홈쇼핑 행동강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ㄷ실로 파견되었던 HHH ==은 2019. 12. 31. 파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재심을 통해 최종 “견책”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대한 징계과정이 부적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공영홈쇼핑 ㄷ팀 소속의 HHH ==은 2019. 7. 11. ㄷ실 파견명령¹⁰⁸⁾에 따라 감사업무를 하다가 2019. 12. 31. 파견기간이 종료¹⁰⁹⁾되었음에도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지 않고 ㄷ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¹¹⁰⁾¹¹¹⁾

ㄷ실은 ㄷ팀에 HHH ==에 대한 ㄷ실 전보발령을 지속적으로 요청¹¹²⁾¹¹³⁾하였으

- 108) 2019. 11. 7. HHH ==에 대하여 그 기한을 2019. 12. 31.까지로 한 ㄷ실 파견명령이 있었고, 해당 인사 발령사항은 공영홈쇼핑 공영넷(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되었음
- 109) ◀◀◀ 당시 ZZq 검임 PZk대행(현재 T추진 TF)은 공영홈쇼핑 파견명령의 경우 정형화된 규정은 없고, 파견기간이 정해진 명령과 파견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명령 2가지가 있는데, 파견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명령은 파견복귀명령을 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정해진 명령은 별도의 파견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중소기업유통센터(샘플 조사) 등도 공영홈쇼핑과 유사하게 파견 인사명령을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됨
- 110) HHH ==은 2020. 1월 초 당시 ◻◻◻◻ xxxx와 ◻◻◻ ZZk(현재 ㄷZq)이 본인은 Z인으로 이미 선정되었으므로 ㄷ실에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했고 kkk ㄷZq(현재 ZZk), aaa π???(퇴사), ◻◻◻ ZZk, ZZZ ZZq(현재 ㄷ팀 =>), ◀◀◀ ZZq 등과 구두 협의하여 ㄷ실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들었으며, ZZZ ZZq도 '20. 1월경 ◀◀◀ ZZq이 ㄷ실로 전보 명령을 내줄 것이니 계속 ㄷ실에 근무하라고 하여 파견기간 종료 후에도 ㄷ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고 %%% k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었음
- 111) ◀◀◀ ZZq은 HHH == 파견복귀'에 대해 당시 ◻◻◻ 대표가 ㄷ실 업무 일정에 맞춰(ㄷ실 편의를 봐주라는 입장) xxxx 등 ㄷ실과 협의해서 복귀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여 본인(◀◀◀)이 2019년 말 ◻◻◻ xx 및 ZZZ ZZq과 협의하였으나 ◻◻◻ xx가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자고 하였고,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 시작으로 HHH == 파견복귀 문제가 후 순위로 밀려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본인과 ZZZ xxZq은 ◻◻◻ 대표와 ◻◻◻ xx에게 HHH ==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 2020. 8월경 ㄷ실에서 %%% k인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면 HHH ==이 ㄷ실에 파견기간을 2019. 12. 31.로 정한 사유는 2019년 공영홈쇼핑 자체 종합감사 예상 종료시점에 맞춰 명시해 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으며, ◀◀◀ Zq도 ◻◻◻ xx 등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진술
- ** ◀◀◀ ZZq은 2020. 2월~5월까지 공영홈쇼핑은 부서들 2조로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대표와 xx도 분리 근무하였다고 진술
- 112) ㄷ실이 2020. 8. 10. ㄷ본부 등에 발송한 'ㄷ실 직원 전보 협조 개요' (ㄷ실20-402, 2020. 8. 10. 접수)의 붙임 의견서에는 ① '20. 1월 HHH == 파견연장 관련 구두 동보(π???, ZZq) 및 HHH == Z인 선정 ② '20. 6. 17. ㄷ팀 UUU \\\(현재 ㄷ실 근무)에게 파견해제 및 전보 관련 서면 결재해 줄 것을 요청하자, HHH ==은 ㄷ팀으로 전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 xx가 직접 ◻◻◻ ???과 통화로 협의하여 추후 ㄷ실로 전보 발령해 준다고 전달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Z인 선정의 효력은 별문으로 하고 구두요청에 대한 정황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UUU \\\는 2020. 6. 17.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113) ㄷ실은 4차레(7.22. 7.28. 7.31, 8.10) ㄷ본부·P실·ㄷ팀에 HHH ==에 대한 전보요청을 하였음(최종결재자 ◻◻◻ xx) * 다만, 7. 22. 전보요청문서에서는 전보대상자가 “HHH ==”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으로 볼 때 HHH ==임을 쉽게 유추 가능

나 口본부는 2020. 7. 28. ㄷ실에 HHH ==이 원소속 부서인 ㄴ팀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서114)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HHH ==은 ㄴ팀에 복귀하지 않고 ㄷ실에서 Z업무를 하였다.115)116)

ㄷ팀 전임 대표이사(이하 “ㄷ팀 대표”라고 한다)는 인사명령에 불이행117)한 HHH ==을 인사위원회에 회부(2020. 8. 21.)하여 「취업규칙」 등118)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2개월119)” 의결하였다.

이에 HHH ==은 재심 신청120)하였으며 재심위원회(2021. 1. 29.)에서는 HHH ==의 주장 일부121)를 받아들여 “정직 2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하고 대표이사 표창에 의한 감경122)으로 최종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 114) ‘파견 직원의 복귀 요청 건’(승팀20-12874, 2020.7.28., 최종결재자 ㄱㄱㄱ 口???)
* (내용) 파견직원(HHH ==)의 파견기간이 2019.12.31.까지로 원 소속부서의 복귀가 7개월가량 지체되었으니 해당직원이 원 소속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115) HHH ==은 ㄱㄱㄱ xx, ㄴㄴㄴ ZZk 등에게 파견복귀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ㄴㄴㄴ ZZk의 경우 본인(HHH)이 Z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ㄱㄱㄱ xx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ㄱㄱㄱ xx는 파견 연장 해 준다고 일전에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원소속 파견복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하여 원소속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116) ◀◀◀ ZZq은 HHH ==이 口본부에서 본인(HHH)에 대해 파견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ㄱㄱㄱ xx가 원소속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본인(◀◀◀)은 인사권자인 ㄷ팀 대표의 지시이므로 개인 비품이라도 원소속 부서에 옮기고 Z업무를 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HH ==도 당시 ◀◀◀ ZZq과 해당 내용으로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117) HHH ==의 파견기간의 종료기한을 2019. 12. 31.로 한 인사명령과 口본부가 2020. 7. 28. ㄷ실에 대한 ‘파견 직원의 복귀 요청 건’에 대한 불이행
- 118) 인사위원회에서는 2020. 7. 28. Z부서의 정식 복귀 요청 공문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HHH ==은 xxxx의 지시만으로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그 귀책사유를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보고 인사명령에 대해 미이행한 사항은 「공영홈쇼핑 취업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52조, 「공영홈쇼핑 근로계약」 제6조 및 제9조 등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보았음
- 119) 「공영홈쇼핑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상 1. 면직, 2. 강등, 3. 정직, 4. 감봉, 5. 견책 등 5개 등급의 징계등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직”은 공무원 기준 중징계에 해당함
- 120) HHH ==의 재심 신청 사유를 보면 회사의 파견복귀요청(2020. 7. 28.)을 따르지 않을 시 ‘감사규정’에 근거해 Z인을 지정(xxxx와 ZZk은 ‘20. 1월 HHH ==을 Z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당시 상황과 인사규정과 감사규정 간의 우위를 본인이 판단하기는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회사의 복귀요청을 불이행한 것으로 고의적인 위반, 해태 등이 아님을 고려 및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21) 재심위원회(2021.1.29.) 의결록에 따르면 HHH ==은 ㄱㄱㄱ xx가 수차례에 걸쳐 본인이 책임을 질 테니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의 단호한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원소속 부서인 ㄴ팀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음
- 122) 「공영홈쇼핑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표창(장기근속표창 제외)을 받은 공적이상의 공적이 있을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가 강등·정직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공영홈쇼핑 직원은 파견발령 등 회사의 인사명령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123)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부서장은 직원이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는 직원이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신속히 사유를 파악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치하는 등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HHH ==이 파견기간 종료 후에도 원소속 부서인 ㄴ팀 복귀 없이 ㄷ실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부서 간 이견124)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7개월 동안 HHH ==이나 ㄷ실에 복귀명령 등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고, HHH == 원소속 부서와 파견부서의 부서장들은 구두로 협의한 것 이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인사명령에 대해 사후관리를 명확하게125) 처리하지 않아 직원이 회사의 파견복귀 명령(2020. 7. 28.)을 따르지 않는 등 인사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126)

아울러 Z부서의 파견복귀 요청(2020. 7. 28.)에도 HHH ==이 원소속으로 복귀하지 못한 이유가 ㄷ팀 대표와 ㄱㄱㄱ xx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127)128)되고, ㄱㄱㄱ xx가 HHH ==으로 하여금 ㄷ실에 남아 있도록 지시129)

- 123) 「취업규칙」 제52조 ① 직원이 진근명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발령일 이후에 발령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발령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부임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갖추어 전임지(前任地)소속 최고책임자를 거쳐 Z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4) ◀◀◀ ZZq은 인사권자인 ㄷ팀 대표가 본인에게 ㄷ실 업무 일정에 맞춰 xxxx 등 ㄷ실과 협의하여 HHH ==을 원소속 복귀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여 본인(◀◀◀)이 ㄷ실 등과 협의하였으나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ZZZ ZZq은 지속적으로 HHH ==을 ㄷ실 직원으로 있도록 Z부서에 이야기하였고 2020. 4월에서 6월경 HHH == 파견복귀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kkk 당시 ㄴZZq도 인력이 부족하니 HHH ==을 원소속으로 복귀시키도록 Z부서에 구두로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정황상 부서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125) HHH == 파견기간이 종료(2019. 12. 31.)되고 원소속 파견복귀 명령(2020. 7. 28.)전까지 7개월 동안은 HHH ==의 파견복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HHH ==이 원소속 부서에 미복귀한 상황임에도 ㄴㄴㄴ ZZk의 추천을 받아 2020. 5. 12.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파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HHH ==의 원소속 부서 복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126) %%% k인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2020. 9월)에 따르면 HHH ==의 「취업규칙」 등 규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Z부서의 인사관리 미흡과 ◀◀◀ ZZq의 업무태도, HHH == 원소속 부서인 ㄴZZq의 소속 직원 관리·감독 소홀, ㄷ실의 업무과실, 파견발령 근거 미비 등에 대해 지적하였음
- 127) ◀◀◀ ZZq은 ㄷ팀 대표와 ㄱㄱㄱ xx 간 노조문제, 인사, 채용 등 대표 관련 비위 조사 등으로 내부갈등이 크게 있었다고 하면서 HHH ==의 파견복귀 문제가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각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128) ZZZ ZZq은 ◀◀◀ ZZq 진술 내용과 유사하게 ㄷ팀 대표와 ㄱㄱㄱ xx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하는 등 직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인사위원회(2020. 8. 21.)에서 HHH ==만을 중징계 처분하는 등 징계과정의 합리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³⁰⁾

한편 HHH ==의 원소속 파견복귀 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실에 남아 있도록 지시한 ○○○ xx는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문책 사유에 해당 하나 2021. 3. 11. 퇴직함에 따라 처분요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관계자 의견】

공영홈쇼핑은 직원 징계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 파견자 복귀명령 등 인사관리를 명확히 수행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HHH == 징계 관련해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음. kkk bZq은 대표와 xx의 갈등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UUU \\\(2020년도 승팀 소속)도 ○○○ 대표와 ○○○ xx 간 갈등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129) HHH ==과 ZZZ ZZq은 ○○○ xx가 원소속 복귀를 못 하도록 단호하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SSS 당시 사실 ==은 ○○○ xx가 원소속 복귀를 만류한 적은 있으나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당시 감ZZk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 xx가 원소속 복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한편, ○○○ xx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HHH == 파견복귀 명령(2020. 7. 28.) 이후 HHH ==에게 원소속 부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이전에 ○○○ ○??이 HHH ==을 사실로 보직 발령해 주기로 구두 협의하였다고 진술)

130) 다만,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최종 “견책” 처분을 받은 HHH ==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 직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하여 결정된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HHH ==에 대한 징계 수위 판단을 존중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음

III-10 무료주차이용권 부당사용 관련 자체점검 후 사후처리 부실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이 입주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큐브(이하 “입주 건물”이라고 한다)는 입주기관에 입주 면적 당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대수를 배정¹³¹⁾ (2021년 기준 차량 89대)하고 있다.

다만, 공영홈쇼핑은 배정받은 무료주차 차량 대수¹³²⁾에 대해 전직원 이용이 어려워 2016. 8. 25. 무료주차 배정기준을 다시 정하여¹³³⁾¹³⁴⁾ 직책수행자(파트장급 이상), 자차 업무활용자, 방송관련자, 상호회지원 및 약자보호자, 외부기관 방문자 등의 차량에 대해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⁵⁾ 공영홈쇼핑 무료주차 이용차량 배정현황은 아래 [표 18]와 같다.

< [표 18] 무료주차 이용차량 배정 현황(2021. 10. 31. 기준) >

구분	직책수행자	공용차량	자차업무활용자	사회적약자	방송관련협력사	여유(방문차량 등)	합계
배정차량 수	49	12	5	3	4	16	89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131) 연도별 입주건물로부터 공영홈쇼핑이 배정받은 무료주차 차량 대수(무료주차이용권)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무료주차 차량 대수	80	80	80	89	89	89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132) 공영홈쇼핑 무료주차권 관리 담당자가 차량번호를 입주건물 주차관리소에 구두나 메일로 알려주면 입주건물 주차관리소에서 해당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등록차량 출입 시 자동으로 출입 통제바가 올라가는 구조임

133) 내부결재 문서 : 2016. 8. 25. Q팀(문서번호: Z16-287)작성,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최종결재

134) 주차 관련 업무는 Q팀에서 2015. 11. 6.부터 2019. 1. 13.까지 담당하다가 직제 개정으로 M팀에서 2019. 1. 14. ~ 현재(2021. 10. 31.)까지 담당하고 있음

135) 단시간 방문차량은 주차권을 유료로 구입하여 활용함(연간 약 59백만원 예산 소요)

2. 관련 법령 등 판단기준

「공영흡소핑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을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강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영흡소핑 소유의 재산과 공영흡소핑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한 때 공영흡소핑은 사적사용에 따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회사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¹³⁶⁾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영흡소핑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특정 직원이 본인 차량은 무료주차 이용 대상이 아닌데도 편법으로 무료주차 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주차편의를 누렸으나 이를 공영흡소핑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공영흡소핑 口팀은 2020. 8월 口口口 ??? 지시¹³⁷⁾에 따라 2020. 9월¹³⁸⁾ 본사 입주건물 내 무료주차 등록차량에 대해 점검¹³⁹⁾하였으며, 조사결과 무료주차 배

136) ‘침해부당이익’ 사안에서 ‘손해’와 관련하여 대법원 다수의견(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체적·현실적 손해가 아니라 ‘사용·수익할 권리의 침해’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문헌(양창수·권영준, 박영사(2017), “민법Ⅱ권리의 변동과 구제” 502p)에 따르면 타인이 법률상 원인 없는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실 자체로부터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음

137) 口口口 ???은 공영흡소핑 일부 직원이 부당하게 무료주차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38) 조사자인 口팀 !!! Zz은 2020. 9. 3. 자료수집 및 검토하고 조사결과보고안(문서번호: 口팀 20-12278)는 2020. 9. 24에 하였으며, 2020. 11. 17. 口口口 ???이 최종결재하였다고 진술함

정기준에 없는 직원 9명의 차량이 등록¹⁴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qwpP 2명(근로 시간면제자)을 제외¹⁴¹⁾¹⁴²⁾한 7명에 대해 사용일수¹⁴³⁾ 기준으로 실비금액¹⁴⁴⁾ 약 435만

139) 조사대상기간: 2018. 07. ~ 2020. 08.(!!! Zz은 공영흡소핑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해가 2018년도이고 2018. 7월 口口口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조사 기간을 2018. 7월부터 조사 시작 전월까지 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40) !!! Zz은 공영흡소핑에 보관 중인 무료주차 등록차량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입주 건물 주차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41) qwpP 2명은 단체협약 시 경영 측에서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 등록해 주었다는 주장이 있어 노무법인 YY에 자문한 결과(2020. 10. 11.) 경영 측이 승인하였다면 환수나 신분상 조치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qwpP 2명은 권익위로부터 부패신고자로 분류되어(2020. 10. 12.) 별도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 ZZq(PZk대행)이 진술하였음

142) CCC 당시(2018년) ZZq(현재 LZq) 등[당시 GGG 노무담당자(노무사, 퇴사)도 유사 진술]은 qwpP 2명의 무료주차 지원에 대해 2018. 4월 노조설립 후 단체협약(2018. 5월경) 시 pPAQ Zqa(●●●)이 VVV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 2019. 3. 30 퇴사)에게 회사 업무용 차량이용 및 조합 입원 전체에 대한 주차지원을 요구하였고 VVV ???은 qwpP 2명에 한해 주차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주차비 지원은 임차공간에 따라 건물관리사무소로부터 무료주차가능 대수를 배정받아 일부 여유가 있어 이를 활용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qw 요구사항 검토자료와 단체협약서 초안*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황상 경영 측이 qwpP에게 무료주차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임. 이에 qwpP에 무료주차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공영흡소핑의 qwpP에 대한 무료주차장기 주기적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 조치하고 결과에 따라 qwpP 2명에 대한 환수여부 결정이 필요

* CCC Zq은 단체협약서를 통해 qwpP 주차지원에 대한 근거를 남기려고 하였으나 VVV ???이 qwpP 무료주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서 등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함
GGG 노무 담당자도 당시 qw 측에서 집행부 전체(정확히 기억나지 않되 5~7명)에 대해 무료주차 지원 등을 요구하여 이를 VVV ???에게 보고하니 기관장급인 qwZqa과 사무qa 2명에게 무료주차지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지원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경우 시스템상 무료주차 등록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니 문서로는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함

· **관련 근거)** 2018년 공영흡소핑 pPAQ 설립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개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었음
① 헌법재판소(2018.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하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와 내용, 금액,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
② 대법원(2019.4.25., 2017두33510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지급 배경과 명목, 조건, 액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③ 노동부는 2021. 1. 5. 행안부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기간·금액과 원조방법/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을 추가하였음
· **검토 내용)** 공영흡소핑이 Zqa 등 qwpP 2명에 당사 건물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pPAQ 요구에 의해 노사간 협의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① qw임원의 활동비 지원의 성격인 점, ② 33개월(2018. 7월. ~ 2021. 3월) 장기간 및 주기적으로 지원 한 점, ③ 무료주차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2명x12개월x132,000원)시 연 317만 원으로 qw 연 총 수입(약 2,000만 원 내외)의 약 15.8%를 차지한다는 점, ④ 무료주차 지원을 특정 qw임원에게만 사용된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qw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143) 2020. 11. 17.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는 입주건물 주차 관리사무소에서 2019. 11월 말 이전 차량 출입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차량출입 기록이 있는 2019. 11월 말 이후 주차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확인이 불가능한 이용기간에 적용하여 총 사용일수를 산출(해당 직원들이 주차 입증이 가능한 경우 해당 주차장 사용일수를 적용)

144) 실비금액 환수 기준 : 월 주차액(132,000원/30일)에 대해 1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하루당 4,400원 환수금액 획정

원을 본인 동의하에 자발적¹⁴⁵⁾ 환수 조치하였다.¹⁴⁶⁾

공영흡소핑 무료주차 등록차량 자체 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은 아래 [표 19]와 같다.

< [표 19] 공영흡소핑 무료주차이용권 등록차량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

이름	♥♥♥	♡♡♡	♣♣♣	♠♠♠	○○○	◆◆◆	▣▣▣	●●●	◎◎◎
무단사용기간(월)	13	7	23	5	5	14	5	26	
사용일수(일)	143	120	352	79	70	136	88	미환수	
환수금(만원)	63	53	155	35	31	60	39		
비고	전직 주차담당		주차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전 직책자		qwpP	

자료 : 공영흡소핑 제출자료 재구성

가. 환수금액 산정 부적정

공영흡소핑은 무료주차 이용 자격이 없는 직원이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을 부당하게 등록하여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한 주차요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¹⁴⁷⁾

그런데 공영흡소핑은 입주건물 주차요금이 1일당 20,000원, 1개월당 132,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당 20,000원이나 월단위 사용기간에 132,000원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할인율이 적용된 1개월 요금을 1일 요금으로 환산하여 1일당 4,400원 요금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환수하였다.

145) [표 19] ???은 임대건물에 부속된 무료주차이용권을 배정기준에 없는 직원이 이용한 것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노무법인 YY에 자문한 결과 해당 직원들로 인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 내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환수 조치 규정도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환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직원 동의하에 자발적 환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46) 무료주차 사용점검 후속 조치사항[구분21-4313(2021.08.17.) 최종결재자 [표 19] ???]: ① 오사용 주차비용 환수 ② 기준 미부합자 차량 일괄삭제('20.7월) ③ qw 무료주차 배정의 경우 8팀 노무법인 검토결과(근로시간제한자에 대해 월주차권 지원은 위법 소지 우려)를 바탕으로 무료주차 지원 종료('21.4.26.) ④ 주차관리소에 무료주차 차량 등록 시 주차 관련 담당자 외 등록요청 불가 조치 ⑤ 신규 무료주차 등록 시 요청부서 협조문 등 증빙 강화 등

147) 부당하게 이용한 주차비는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 또는 월 단위 주차요금으로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민법 제748조(수익자 반환범위)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공영흡소핑이 정당하게 환수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¹⁴⁸⁾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미시행

공영흡소핑은 무료주차 이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차 배정기준 개선안」¹⁴⁹⁾을 마련(2016. 8. 25, Q팀)하여 대표이사 보고(결재) 후 2016. 9. 1.부터 시행하였다.¹⁵⁰⁾

따라서, 공영흡소핑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있는 차량에 한하여 무료주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차관련 업무담당자는 사적사용 등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없는 직원 차량을 업무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 내부 보고 과정 등을 통해 승인을 득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영흡소핑은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없는 직원이 무료주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였을 경우 환수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¹⁵¹⁾

그런데 부당 무료주차 이용직원 중 당시 공영흡소핑 주차 관련 업무담당자¹⁵²⁾인 ♡

148) (예시) 환수대상 7명에 대해 1개월 주차요금 132,000원을 부당 사용 기간(월)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환수한 금액 차액

이름	♥♥♥	♡♡♡	♣♣♣	♠♠♠	○○○	◆◆◆	▣▣▣	계
무단 사용기간(월)	13	7	23	5	5	14	5	72
환수금(만원)	63	53	155	35	31	60	39	436
월단위 주차요금 적용(만원)	172	92	304	66	66	185	66	951
차액(만원)	-109	-39	-149	-31	-35	-125	-27	-515

149) 무료주차 배정(총 80대) : 기본배정 44대(업무용차량, 파트장급 이상 직책수행자), 추가배정 20대(차차업 무활용자, 방송관련자 등 소관부서장 위임), 기타 16대(상조회지원, 약자보호, 외부기관 방문 등에 활용)

150) 다만, ㄷ실 UUU \는 공영흡소핑 무료주차배정기준을 사내계시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151) 「공영흡소핑 상벌요령」 제1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조치를 하도록하고 있고 비위행위가 경미할 경우 시말서를 징구하고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여 검토 후 주의 또는 경고 처분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52) 주차업무담당자 현황(2018년 이후) : ♡♡♡ Zz(2018. 1월 ~ 2018. 8월, 당시 파견직원) → ♥♥♥ Zz(2018. 9월 ~ 2019. 12월, 당시 파견직원) → ♡♡♡ Zz(2020. 1월 ~ 2020. 2월) → !!! Zz(2020. 3월 ~ 현재)

♡♡ Zz과 ♥♥♥ Zz은 무료주차 배정기준에는 없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¹⁵³⁾로 본인 차량과 같은 부서 직원의 차량을 부서장 보고 및 승인이나 별도의 기준 없이 무료 주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록하였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나 직책 해제 시 등록을 삭제하도록 입주건물 주차관리소에 알려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약 5개월 이상 무료주차 편의를 누리게 하였다.¹⁵⁴⁾¹⁵⁵⁾

또한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없는 주차 관련 부서 일부 직원¹⁵⁶⁾¹⁵⁷⁾¹⁵⁸⁾¹⁵⁹⁾들은 주차

- 153) 전 주차업무담당자 ♥♥♥은 기준은 없지만 t업무 수행시 필요 물품 구입, 비상근무, 특정업무에 따른 이른 출근 등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무료주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업무용차량은 U부서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직원차량을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료주차권을 사용하였으나 공영홈쇼핑에 배정된 무료주차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음
⇒ 무료주차배정기준을 볼 때 업무용차량 지원은 W팀, R팀, QA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료주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부 결재나 보고문서, 별도의 기준 등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관의 무료주차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없는 직원 중 주차관련 부서의 타부서 직원의 차량을 등록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본인과 같은 부서 직원 차량만 등록 후 장기간 그대로 둔 점 등으로 볼 때 직원 간에 형평성 및 기관의 무료주차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흠결이 있어 보임
- 154) ♥♥♥은 파견직원 신분(2018. 8. 20. ~ 2019. 11. 30.)으로 주차 관련 업무를 맡았을 때 무료주차 관련 정리된 자료나 목록이 없었다고 하면서 진입자가 한 업무 그대로 이어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인은 직원 생일차 상품권 구입,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물건 구입 등 업무용으로 본인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 \\'의 경우 n업무를 하면서 대표 출장일정에 따라 새벽출근 등으로, ♣♣♣ &&은 2019. 7월 회사 내 전원장치 화재 사고로 새벽근무가 많아 안전관리 담당자로 등록한 이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음
- 155) ♥♥♥은 t팀(현 o팀) 직원(자차 미이용자 제외)의 경우 관례적으로 업무용 등으로 본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종종 무료주차 이용 등록하여 사용하였고, ♥♥♥ 본인은 최초에는 긴급공사, 방송사고,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무료주차를 이용하였으나, 이후에는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아울러 ▣▣▣ &&의 경우 Zz 보직해제 후 본인이 관리하는 자료에는 삭제되어 있었으나 주차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 \\'의 경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등록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156) ♣♣♣ &&(o팀 근무: 2019. 4. 10. ~ 2019. 12. 25.)은 당사 무정전전원장치 화재에 따른 방송중단 사태 등으로 늦게 퇴근하거나 새벽 근무가 많아 주차업무담당자가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등록해 준 것으로, 본인(♣♣♣)은 주거지가 회사와 가까워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자차를 이용하지 않아 업무용 외에는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차 관련 담당자가 본인 차량에 대한 등록삭제를 놓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157) ♣♣♣ \\'(Q팀 근무: 2015. 11. 06. ~ 2019. 1. 14.)는 출산휴가 복귀 후 육아로 인한 이른 출근을 고민하던 중 주차 관련 담당자(누구인지 기억 없음)가 무료주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본인 차량을 등록해 주었고, 처음에는 업무용(행사준비 등)으로 무료주차를 이용하다가 ▣▣▣ 대표 n업무를 지원하면서(2018년 말경) 대표의 업무를 챙기는 등 일찍 출근하는 일이 많아 계속 이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한편, ♣♣♣ \\'는 2019.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으며(차량은 qq이 사용) ▣▣▣ 대표 일정 관리, 회의체 운영지원, 출장 관리 등으로 새로 구입(2019. 9월)한 차량을 무료 주차할 수 있게 주차업무담당자가 등록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
- 158) ○○○ \\'(o팀 근무: 2020. 1. 21. ~ 2021. 5. 9.)은 o팀에 발령받자마자 코로나19 발생으로 C실 TF(JTF)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C실 TF팀은 타 직원과 달리 매일 TF모임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출퇴근 시내버스내에 확진자 발생으로 출퇴근을 고민하던 중 주차업무담당자(당시 담당자 인수

관련 업무담당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등록해 준 후 본인들은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없는 타 직원들과 달리 약 5개월 이상 무료주차 편의를 누렸다.¹⁶⁰⁾

이에 공영홈쇼핑은 무료주차 부당 이용 관련 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직원에 대해 비위 정도를 조사하여 「공영홈쇼핑 인사 규정」¹⁶¹⁾과 「공영홈쇼핑 상벌 요령」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¹⁶²⁾¹⁶³⁾

그 결과 특정 직원이 수년간 편법으로 주차 편의를 누렸음에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회로부터 지적¹⁶⁴⁾받는 등 논란이 발생하였다.

인계 단계로 누구인지 기억(안남)가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 등록해주었다고 하면서, 무료주차이용권을 일반직원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음

- 159) Zz 보직해제후 무료주차 이용 자격이 상실된 ▣▣▣ &&은 주차업무담당자에게 주차를 유료로 전환해 달라고 하였고 주차업무담당자가 누락한 것 같다고 하면서 과거에 유료주차를 이용하는 직원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관련 제도는 2020. 1월부터 종료)이어서 무료주차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 ==은 경차 할인이 있는 옆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계약업무파트장 발령으로 주차업무담당자가 당사 건물에 무료주차 이용할 수 있게 본인차량을 등록해 주었으며 2019. 4월 계약파트 업무가 Y팀으로 이관된 후에도 계약파트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별도 파트장 해제발령이 없어 별다른 생각 없이 무료주차를 계속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160) 다만, !!! Zz은 점검 이전에도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 무료주차 배정기준에 있는 W팀, R팀, QA팀 한해서만 무료주차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당시 조사 시에 관련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시작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161) 「공영홈쇼핑 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직원을 정계할 수 있고 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162) 무료주차 이용 관련 자체점검을 지시하고 지휘한 ▣▣▣ ???은 부당 무료주차 이용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 입대건물에 부족된 무료주차이용권을 배정기준에 없는 직원이 이용한 것 관련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노무법인 YY에 자문한 결과 해당 직원들로 인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 내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환수 조치 규정도 별도로 없어 일반직인 환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직원 동의하에 자발적 환수 조치를 시행하였음
 - 자발적 환수 여부에 따라 정계위원회 의결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환수가 끝난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하였고 자발적 환수조치가 2021. 8월경에 완료되어 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위한 추가조사 등을 사실에 해 줄 것을 논의하였으나 사실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까지 이르게 되었음
- 163) 아울러 ▣▣▣ ???은 o팀에서 무료주차 배정기준 미부합자 9명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o팀20-12354, 2020. 11. 23.)를 o팀에 요청한 협조문서에 대해, 본인은 두 부서를 관장하는 o본부장으로 업무분장 차원에서 환수조치는 o팀에서 하되 신분상 조치는 o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o팀으로 업무를 넘긴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모두 지휘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164)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종합감사(2021. 10. 21.)직 후 서면질의

【징계요구 양정】

무료주차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이 부당하게 무료주차 편의를 누리도록 하거나 누린 ♡♡♡ 및 ♥♥♥은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취업규칙」 제8조 제1항¹⁶⁵⁾을 위반한 것으로 「상벌요령」 제13조 제1호, 제2호, 제10호의 징계사유¹⁶⁶⁾에 해당한다.¹⁶⁷⁾¹⁶⁸⁾

【관련자 의견】

공영홈쇼핑은 부당하게 무료주차 편의를 누린 직원들의 사후처리가 미숙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관련자에 대해 환수금액을 재산출하여 추가 징수하고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 ① 부당하게 사용한 무료주차 환수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절한 환수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고, (통보)
- ② 무료주차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이 부당하게 무료주차 편의를 누리도록 하거나 누린 ♡♡♡ 및 ♥♥♥에게 징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징계)
- ③ 장기간(23개월) 부당하게 무료주차 편의를 누린 ♣♣♣ \\\는 경고, 단기간(5개월) 부당하게 무료주차 편의를 누린 ♣♣♣ &&과 ○○○ \\\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경고)

165) 「공영홈쇼핑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 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166) 「공영홈쇼핑 상벌요령」 제13조 제1호 회사의 취업규칙, 강령, 규정, 요령, 기준, 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 제2호 청렴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의 허락 없이 사업의 영위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한 때, 제10호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
 167) 주차업무담당자와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 &&, ♣♣♣ \\\, ○○○ \\\ 등 직원 3명은 주차업무 담당자가 무료주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고 그대로 문 점, 진출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무료주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168) 직책에서 해제된 후 계속 무료주차 등록차량으로 이용한 ■■■ &&과 ◆◆◆ ==은 무료주차 등록 삭제를 누락한 주차업무담당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여 별도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음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경징계 2건, 주의·경고 7건(개인 2, 기관 5), 통보 5건

구분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입점 신청상품 처리 및 반품평회 평가 부적정	-	경고		'22. 3월	
2	농수산분야 중소기업 제품 선정.판매 부적정	-	통보		'22. 3월	
3	차수변경 운영 부적정	-	통보		'22. 3월	
4	샘플관리 부실 운영	-	주의 통보		'22. 3월	
5	대체방송상품 선정 관리 미흡	-	통보		'22. 3월	
6	승진인사제도 운영 부실	-		경징계(1명)	'22. 2월	
7	부서장 직무대행 운영 부 적정	-	경고		'22. 3월	
8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통보	경고(4명)	'22. 3월	
9	파견기간 종료 후 원소속 미복귀 직원 징계과정 등 부적정	-	경고		'22. 3월	
10	무료주차이용권 부당사용 관련 자체점검 후 사후처 리 부실	-	통보	경징계(2명)	'22. 2월	
				주의·경고(3명)	'22. 3월	

2. 개인 처분 명세 : 경징계 3명, 경고 5명, 주의 2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	-	◀◀◀			○	종합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경징계)
2	-	-	▷▷▷		○		출장내역 미기록
3	-	-	▶▶▶		○		근태기록 누락
4	-	-	♠♠♠		○		
5	-	-	♣♣♣		○		
6	-	-	♡♡♡			○	무료주차 등록업무 소홀 및 부 당 무료주차 편익
7	-	-	♥♥♥			○	
8	-	-	♣♣♣		○		부당 무료주차 편익
9	-	-	♣♣♣	○			
10	-	-	○○○	○			